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전현진 사무관 박성철	042-481-5460 042-481-571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4월 4일(목)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과 PCT국제조사수수료 인하 등 추진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특허신탁제도)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를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를 위하여 특허를 관리하는 제도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특허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19.7.9.시행 예정)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박성철 사무관(☎ 042-481-5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①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50%감면(4년분~존속기간) 도입

* (현행)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無
→ (개정안)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 감면 제도 도입

- ②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 면제 제도 도입

* 특허법§139의2, 실용신안법§33, 디자인보호법§125의2, 상표법§124의2('19.7.9.시행)

- ③ PCT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

① 국제조사료(영문) 인하 * (현행) 130만원→ (개정안) 120만원

② 개도국 출원인에 대한 국제조사료 75% 감면 규정 마련

* 감면대상이 되는 국가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

③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건이 국내에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료 감면 확대 * (현행) 심사청구료 30% 감면 → (개정안) 심사청구료 70% 감면

- ④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종이로 발급하는 특허 등록증 대신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등록료 1만원을 감면('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 활성화를 촉진

수 특허권 등의 포기에 따른 권리말소등록 신청 수수료(5천원)의 무료화로 권리유지 의사가 없는 자의 말소 등록을 유도

- ⑥ 평균감면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수수료 납부 부담을 경감

* (현행) 평균감면비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개정안) 소수점 이하 절상

- ⑦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금융계좌 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서식개정안)

*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